

기안용지

분류기호 문서번호	도로 30516- ¹¹⁷	(전화: 731-6377)	시행상 특별취급
보존기간	영구·준영구: 10.5.3.1.	시 장	
수신처 보존기간		1 7 기안 87.9.11	
시행일자	'87. 9.		
보조 기관	부시 장 전결 건설관리국창 주 도로과창 주	협 조 기 관	기획관리실 주 법무담당관 주무과발송
기안책임자	도로시설계장 주 (김근섭)		발급증서 1987.9.15 통제관
경유 수신 참조	각 안 참 조	발 신 명 의	송 인
제 목	서울특별시 도로굴착업무(승인, 복구) 지침 개정		
(제 1 안)	87.9.11		
수신 내부결재	87.9.11 취급제 494		
제목 같은건			
1.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및 도로손계자 부담금 징수조례가			
'87.9.4자 서울특별시 조례 제2212호로 개정공포됨에 따라 관련 도로굴착 업무(승인,			
복구) 지침을 별첨과 같이 보완개정코자 합니다.			
첨부 : 1. 개정 사유서.			
2. 서울특별시 도로굴착업무(승인, 복구) 지침 신규 대비표 1부.			
3. 개정(안) 전문 1부.			

(제 2 안)	
수신 시민과장	발신 : 도로과장
제목 시보 게재 의뢰	
1.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괴자 부담금 징수조례가 개정 (87.9.4)됨에 따라 관련 서울특별시 도로굴착 업무(승인, 복구)지침을 별첨과 같이 개정코자 시보게재 의뢰하오니 발령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서울특별시 도로굴착업무(승인, 복구) 지침(개정) 1부.	
(제 3 안)	
수신 수신처 참조	
제목 서울특별시 도로굴착업무(승인, 복구) 지침 개정 통보	
1.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및 도로손괴자 부담금 징수조례가 '87.9.4자 서울특별시 조례 제2212호로 개정공포됨에 따라 관련 도로굴착 업무(승인, 복구) 지침을 개정 통보하오니(하) 도로굴착 관련업무 시행에 참고하시기(하기) 바랍니다(바람)	
첨부 : 서울특별시 도로굴착업무(승인, 복구)지침(개정)1부. 끝.	
수신처 : 가스과장, 재개발과장, 주택개발과장, 지적과장, 공원과장, 녹지과장, 급수과장, 수원지천과장, 하수과장, 치수과장, 종합건설본부장(총무부장),	

2336

<p>지하철공사사장, 시경철국장(교통과장), 서구1-17(토목과장), 동, 서, 남, 북부 건설사업소장, 남, 북부수도관리사업소장, 한국전기통신공사사장(건설사무소장, 서울지사장, 서울전신전화건설국장, 남서울전신전화건설국장), 한국전력공사사장(배전처장, 지중선사업처장), 대한, 극동, 강남, 도시가스(주)사장, 한국가스공사사장, 한일개발(주)사장</p>

2337

서울특별시 도로굴착업무-(승인.-복구)지침 개정.안-

'87. 9.

홍시장

건 설 관 리 국

2338

서울특별시 도로굴착 업무 (승인. 복구)지침 개정

(서울특별시 예규 제366호 , '77.9.30)

“要約”

1. 개정사유

-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및 손괴원인자 부담금 징수조례 개정_{에 따라} 지침을 보완
개정
- 지방자치제 실시에 대비 지침을 보완 개정함으로써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추진

2. 주요골자

- 본청 사전 조정 대상 변경: 도로폭 20M (현행) → 25M(개정)로 조정
(안 제2조 제1항 1호)
- 지자체 실시시 도로폭 25M 이상은 본청 소유채산임.
- 도로굴착 기간 조정위원회 개최 : 매년2회 (6월, 9월) → 매년1회(9월중)로
조정 (안 제3조 1항)



서울특별시 도로굴착업무(승인, 복구) 지침 개정 지침(안)

서울특별시 도로굴착업무(승인, 복구) 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987. 9.

서울특별시

○ 제 1 조(목적) 이 지침은 도로법 제40조, 동법 시행령 제24조및 제24조의 2내지 제24조의 10, 서울특별시도로복구 원인가 부담금및 도로손괴자 부담금 징수조례의 규정에 의한 도로굴착 승인및 복구허가와 사전기간 조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로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 시민편익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도로굴착 관련사업 조정위원회 조정대상및 기준)

(1) 도로의 굴착승인 신청은 서울특별시 도로굴착관련사업 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또는 각구도로 굴착관련 사업조정 소위원회의(이하"소위원회"라한다)에 부여 하여 기간조정 심의를 거친후에 하여야하며, 위원회별 조정심의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위원회 조정심의 대상은 도로폭 25미터이상 도로의 굴착공사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가. 아스팔트 포장도로 : 연장 100미터 이상

나. 콘크리트 포장도로 및 보도 : 연장 500미터 이상

다. 도로폭 25미터 이상 간선도로의 횡단굴착으로 인하여 교통소통에 상당한 지장을 주는 굴착

2. 소위원회 조정심의 대상은 제1호 이외의 굴착공사의 경우로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공사및 민원해소를 위한 공사등 사전에 예측할수 없는 사업으로서 도로굴착기간조정 신청기간내에 신청하지 않은 공사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장(이하"시장"이라한다) 또는 구청장이 직접기간조정할 수 있다 다만, 뒷골목의 소규모공사(개인의 건축행위등으로인한 연장 10M미만의 굴착)은 기간조정없이 구청장이 수시로 굴착승인및 복구허가 할수 있다.

○ 제 3 조(굴착신청 기간 공고) 시장은 매년 1회(9월중) 15일 이상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다음년도에 도로굴착 공사를 위한 기간조정 신청 공고를 하여야 한다.

1. 신청대상
2. 신청기간
3. 구비서류
4. 접수처
5. 신청요령

○ 제 4 조(굴착기간 조정 신청 처리)

- (1) 신청인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신청 기간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도로굴착 기간 조정 신청서를 관할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2) 구청장은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굴착 기간 조정 대상을 접수하면 현지 조사와 소위원회의 예비 조정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진달하여야 한다.

○ 제 5 조(굴착기간 조정 통보)

- (1) 시장은 위원회를 개최하여 굴착방법, 굴착기간등을 조정하여 그결과를 구청장에게 통보한다.
- (2) 구청장은 제2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조정대상에 대하여는 현지조사및 소위원회의 심의 조정후 그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하며, 위원회 조정 결과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 6 조(굴착승인 및 복구허가)

- (1) 도로굴착 및 복구를 하고자하는자(이하 "신청인"이라한다)는 조정통보된 기간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도로굴착승인 및 복구허가신청서에 도로굴착및 복구작업 계획서(별지 제3호서식)를 첨부하여 관할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다만, 신청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구공사를 시행치 못할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도로관리청에 복구공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지변, 기타의 재해등으로 인한 긴급굴착및 복구공사를 할경우에는 그사유를 명시하여 도로굴착승인및 복구허가 신청서를 사후에 제출할수 있다.
- (3) 구청장은 도로굴착 승인및 복구허가 신청사항을 별지5호서식에 의한 도로굴착 신청 현장조사서에 따라현지조사후, 굴착및 복구의 시기, 방법등이 타당하면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고지서를 발부하고, 신청인이 위부담금을 납부하였을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도로굴착 승인및 복구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현지조사 결과 굴착코자하는 구간의 포장상태가 불량하여 전폭복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복구비를 징수한후 도로관리청이 복구할수 있다. 이경우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 (4) 구청장은 도로의 굴착승인및 복구허가를 할때에는 그내용을(별지 6호서식) 당해 구간에 매설된 타시설물의 관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뒷굴쪽 소규모공사(개인의 건축등으로인한10㎡미만의 굴착)및 이에 상응하는 소규모 굴착공사는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 (5) 구청장은 아스팔트 포장도로의 굴착승인 및 복구허가를 할때에는 위치도면을 첨부하여 그내용을 관할건설사업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 7 조(굴착승인 제한)

- (1) 도로굴착기간 조정및 승인을 할때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제한한다.
 1. 신설 또는 개축한 날로부터 3년(보도인경우에는 1년)이내 굴착
 2. 도로굴착 관련공사를 시행한 구간은 그공사가 완료된 날로부터 2년(보도인 경우에는 1년)이내 굴착
 3. 두기(7월경)와 동절기(12월 - 익년2월)의 굴착
- (2) 도심지 간선및 교통혼잡지역의 굴착은 야간작업을 원칙으로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 제 8 조(시행자의도로복구)

- (1) 도로의 굴착및 복구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자(이하 "시행자"라한다)는 당해굴착및 복구공사의 착공5일전에 관 할구청장에게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 (2) 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착공계를 접수한 때에는 당해공사의 감독원을 지정하여 도로굴착승인 및 복구허가 사항의 이행여부를 확인 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 (3) 시행자가 도로의 굴착및 복구공사를 완료한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준공계를 관할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4) 구청장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계를 접수하면 현지 확인을 한후 굴착및 복구 공사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5) 시행자가 도로의 굴착및 복구공사를 시행할때에는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연인자 부담금 및 도로손괴자 부담금 징수 조례 별지3의 도로굴착및 복구공사시 이행사항을 준수 하여야하며, 당해공사 착공전에 서울특별시 공사장 주변 안전시설 설치 지침에 의한 각종 안전시설을 설치한후 시행하여야 한다.

○ 제 9 조(관리청의 도로복구)

- (1) 제6조 1항단서, 동3항단서 또는 구청장이 굴착공사를 시행할때에는 도로폭 25미터이상 도로의 차도부분은 관할건설사업소장이 기타의 도로는 관할구청장이 각각복구 공사를 시행하여야한다. 다만, 도로폭 25미터 미만의 도로라 할지라도 차도부분에 대하여는 구청장은 건설사업소장에게 복구공사를 의뢰할 수 있다.
- (2) 관할 구청장 또는 건설사업소장은 굴착된 도로를 직접복구하거나 단가 계약자에게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거 복구작업 지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굴착 시공업체가 당해복구공사에 적합한 건설업 면허를 소지한 경우에는 신속한 도로복구를 위하여 복구공사와 병행 시행할수 있다.

○ 제 10 조(보고 등)

- (1) 구청장은 매월말 현재의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현황을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하여 익월 1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2) 구청장 및 건설사업소장은 굴착복구 상황판을 설치하여 굴착복구 상태를 수시 파악 및 즉시 복구할 수 있도록 운영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1987. 10. 4부터 시행한다.



(제 1 호 서식)

도로굴착 기간조정 신청서
=====

○ 신청 부서

- 기관명 :
- 주소 :
- 전화 번호 :

아래와 같이 도로를 굴착코자 하오니 기간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굴착 내역

번호	노선명	굴착구간	연장(M)	포장종류	매설관경	시행부서	공사기간	비고

첨부 : 1. 위치도면(1/3,000 현황도에 표시) 2부.



19

신청기관

(인)

구청장 귀하

도로굴착 승인및 복구허가 신청서
=====

- 신청자
- 기관명 :
- 주소 :
- 전화 번호 :

아래와 같이 도로를 굴착및 복구코자 신청하오니 굴착승인및 복구허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굴착및 복구내역

노선명	굴착구간				
목적					
규모	포장별	굴착폭(M)	연장(M)	면적(M ²)	비고
	아스팔트 포장도로				
	콘크리트 "				
	보도				
	경계부력 및 측구				
기타					

- 복구업체 :
- 공사기간 :
- 구비 서류
 - 1) 위치도면(1/3,000현황도) 3부 (단.. 뒷골목 소규모 공사는 위치약도 1부로 대체)
 - 2) 굴착복구 설계도서 2부
 - 3) 복구영역 면허증 사본 1부
 - 4) 굴착복구 작업계획서 1부
 - 5) 굴착구간 지하매설물도 1부 (단, 뒷골목 소규모 공사시는 제외)



신청부서 (인)

구청장 귀하

도로굴착 및 복구작업 계획서

○ 굴착 및 복구부서

- 기관명 :
- 주소 :
- 전화 번호 :

다음과 같이 도로를 굴착및 복구코자 작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19

다 음

1. 사업명 :
2. 굴착목적 :
3. 굴착및 복구규모 : 아스팔트 M 콘크리트 M
보 도 M 사 리 도 M
4. 굴착및 복구기간 :
5. 시공 회사
 - 굴착자 시공회사 :
 - 복구자 시공회사 :
6. 굴착및 복구 일정계획

공구별	구간	연장(M)	포장종류	굴착 계획		복구 계획		비고
				작업일자	작업시간	작업일자	작업시간	

첨부 : 교통처리 계획 1부.



신청부서

(인)

구청장 귀하

도로 복구 의뢰서
=====

- 공사 명 :
- 굴착 구간 :
- 굴착 일시 :
- 복구의뢰 내역


포 장 별	폭(M)	연장(M)	면적(M ²)	비 고
아스팔트 포장도로				
콘크리트 포장도로				
보 도				
경계부력 및 측구				
기 타				

- 복구의뢰 사유서

- 당사(부)에서 굴착코자하는 도로에 대하여 위 복구의뢰 내역 및 사유서와 같이 복구 의뢰하오니 귀청에서 복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 . . .

신 청 부 서


 (인)

구 청 장 귀 하

도로굴착 신청현장 조사서
=====

명에 의하여 도로굴착 신청승인에 따른 현장조사한바를 다음과 같이 복명합니다.

19.

조사자 직명
성명 (인)

신청자		주소									
		성명									
굴착위치											
굴착목적											
포장별	연장	굴착폭	면적(M ²)		포장등급	복구비			비고		
			직접손계	간접손계		계	직접손계	간접손계			
손 계 구 모 기 탁	계										
	이스팔트										
	콘크리트										
	보도										
	기탁										
굴착시기											
조사자 의견											

첨부 : 1. 현장조사 내역서 1부.

구 청 장 귀 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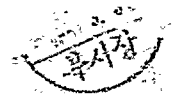
도로굴착승인 및 복구 허가서
=====

- 공 사 명 :
- 신 청 자 :
- 복 구 자 :
- 굴착 및 복구 기간 :
- 굴착 및 복구 개요 :

포장 종류	폭(M)	연장(M)	손제면적(M ²)		복 구 비			비고
			직접손제	간접손제	계	직접손제	간접손제	
아스팔트 포장도로								
콘크리트 포장도로								
보 도								
경계부력 및 측구								
기 타								

- 원인자 부담금 납부 금액 : 원
- 납부 일자 :
- 납부확인자 : 직명: 성명:

상기 도로굴착 및 복구는 별첨 조건을 부여하여 승인 및 허가함.



구 청 장 (인)

(조 건)

1. 굴착승인 기간내에 시공치 않을경우 승인은 자동무효가 되며, 승인기간외의 굴착은 무단굴착으로 인정한다.
2. 도로시설물인 측구, 보차도경계부력(석), 가드레일, 가로등 및 가로수등을 손상시키지 않도록하고, 하수구가 메워지는 일이 없도록 가마니, 모래주머니 등으로 보호조치하여야 한다. 또한 현장주변에 자재, 토사, 오수등 잔재 방치를 금하며 항상 정돈된 환경을 유지하고 공사완료후에는 주위를 청결히 정돈 정비하여야 한다.
3. 공사 기간중에는 서울특별시 공사장주변 안전시설 설치 지침에 의거 안전 칸막이, 안내간판및 야간조명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해야하며, 교통처리에 대하여는 관할경찰서와 협의한후 시행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시 모든 책임은 시행자가 진다.
4. 미포장 구간은 추후 포장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최소 1M이상 깊이로 매설 하여야한다. 단 이의 불이행으로 지장 및 손상이 있을시는 매설자 자체 부담으로 이전 또는 재매설하여야 한다.
5. 복구공사 준공검사시에는 당구청이 지정하는 직원으로 하여금, 입회토록 하고, 입회직원의 확인을 득한후 준공처리 하여야 한다.
6. 기타 공사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및 도로 손괴자 부담금 징수조례 별표 3호에 의거 시행한다.

착 공 계

- 공 사 명 :
- 시행 부서 :
- 굴착 업체 :
- 복구 업체 :
- 굴착승인및 복구허가 - 승인및 허가번호:
- 년 월 일 :
- 착공예정일 :
- 준공 기한 :
- 굴착및 복구예정 물량

구 분	구 간 (위 치)	연장(M)	비 고
계			
아스팔트 포장도로			
콘크리트 포장도로			
보 도			
기 타			

- 위와 같이 굴착및 복구공사를 착공할 예정이기에 착공계를 제출합니다.

19

제 출 자

(인)

- 관할구청 현장감독 경유
 - 소 속
 - 직 명
 - 성 명

(인)



구 청 장 귀 하

준 공 계

- 공 사 명 :
- 시행부서 :
- 굴착 업체 :
- 복구 업체 :
- 굴착승인및 복구허가 [승인및 허가번호:
년 월 일 :
- 착 공 일 :
- 준 공 일 :
- 복구 물량

구 분	구 간(위 치)	연장(M)	비 고
계			
아스팔트 포장도로			
콘크리트 포장도로			
보 도			
기 타			

○ 위와 같이 도로굴착에 따른 복구공사를 완료 하였기에 준공계를 제출합니다.

19

제 출 자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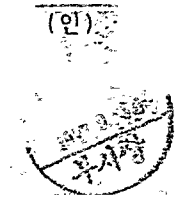
○ 관할구청 현장감독 경유

- 소 속

- 직 명

- 성 명

(인)



구 청 장 귀 하

도로 복구 확인서

- 공사 명 :
- 시행 부서 :
- 복구 업체 :
- 굴착승인및 복구허가 - 승인및 허가번호:
- 년 월 일 :
- 착 공 일 :
- 준 공 일 :
- 복구 물량

구 분	구 간(위 치)	연 장(M)	비 고
계			
아스팔트 포장도로			
콘크리트 포장도로			
보 도			
기 타			

위 도로굴착에 따른 복구공사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함.

구 청 장 (인)

(제 11 호 서식)

분류번호 :
 수 신 : 서울특별시청
 참 조 : 도로과장
 세입과목(관) (항) (목)

발신 : 구송장

확인자(직) (성명) (인)
 작성자(직) (성명) (인)

19 년 일본 수입보고서

구분	조 청 액						징 수 액						미 징 수 액					
	본 월 분			누 계			본 월 분			누 계			본 월 분			누 계		
	계	직접복구	간접복구	계	직접복구	간접복구	계	직접복구	간접복구	계	직접복구	간접복구	계	직접복구	간접복구	계	직접복구	간접복구
계	합 계																	
	전 기																	
	전 화																	
	도시가스																	
	상 수도																	
	기 타																	
현 년 도	소 계																	
	전 기																	
	전 화																	
	도시가스																	
	상 수도																	
	기 타																	
과 년 도	소 계																	
	전 기																	
	전 화																	
	도시가스																	
	상 수도																	
	기 타																	